<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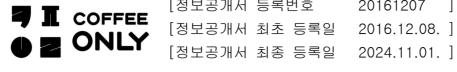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120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12.08.] coffeeman@coffee900.com

[커피온리]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커피온리」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커피온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 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5층(역삼동, 대건빌딩)

[대표 전화번호] 1588-5049

[대표 팩스번호] 02-2268-3515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70-4192-09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 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커피온리
2019.08.22	2019.08.22	사업자등록번호 495-86-01614
		법인등록번호 110111-721184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커피온리	커피온리 외 1 개	서울특별/ 5 층	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역삼동, 대건빌딩)
특수관계인	강남구(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원)	홍승환(사내이사)	강남구	1588-5049	02-2268-3515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하우스터디 외 1 개	서울특별/ 5 층	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역삼동, 대건빌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이치스페이스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홍승환	02-780-555 8	02-702-0233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작심 외 2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5 층(역삼동, 대건빌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지스토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강남구	1522-1713	02-6008-096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언노운핸즈	언노운 커피&베이커 리	2022.1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49-8,2층(연남동)	김헌영
인수함	㈜커피만컴퍼 니	커피온리	2022.1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49-8,3층(연남동)	김헌영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커피온리"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피온리			
상 호	커피온리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ONLY	등록번호 제4019032440000		
그 밖의 영업표지	COFFEE @ ONLY	등록번호 제4014655370000		
광 고	대증매체를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7,561	2,595	4,966	0	-1,280	-933
2022	971,942	951,704	20,238	121,704	18,261	15,271
2023	987,191	585,768	401,422	553,600	107,545	375,83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 - 현 직위 -		사업경력			
그런어구	VI a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기기 등		CII 코 OI AI	2019.08 ~ 현재	㈜커피온리 대표이사	업무 총괄		
관련임원 강남구	대표이사	2016.10 ~ 현재	㈜아이엔지스토리 대표이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가맹사업 등 소 등 기기기		2019.08 ~ 현재	㈜커피온리 사내이사	운영 지원		
관련임원	홍승환 사내이사	2018.08 ~ 현재	㈜아이엔지스토리 사내이사	운영 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저	임원-	지이人/대\	
시 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 년 12 월 31일	2	_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주)아이엔지스토리	가맹사업	2016 06청제	작심(등록번호: 20160479)이라는
(계열회사)	(무)아이앤시스도디	경영	2016.06~현재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지스토리	가맹사업 경영	2017.05~현재	작심스터디카페(등록번호: 20190640)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지스토리	가맹사업 경영	2019.01~2021.12	작심하우스(등록번호: -) 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지스토리	가맹사업 경영	2018.02~현재	작심스페이스(등록번호: 20190638)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커피온리	가맹사업 경영	2022.10~현재	커피온리 (등록번호: 20161207)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커피온리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시작예정	언노운커피&베이커리 (등록번호: 20212407)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이치스페이스	가맹사업 경영	2019.02~현재	하우스터디스터디카페(등록번호: 20190115)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이치스페이스	가맹사업 경영	2017.02~현재	하우스터디(등록번호: 20170668)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의 사용기간)
COFFEE (ONLY	가맹점	2017.09.21. 출원	출원 제4020170121470	주식회사	2029.04.03.
(상표권)	내외운영 2019.04.03.	2019.04.03. 등록	등록 제4014655370000	커피온리	2029.04.03.
기 I COFFEE ● Z ONLY (상표권)		2021.03.11. 출원 2022.08.26. 등록	출원 제4020210050406 등록 제4019032440000	주식회사 커피온리	2032.08.26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중 출원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커피온리] 가맹사업 현황

1. [커피온리]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6년 9월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년 8월 22일)

2. [커피온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만	진일호	2016년09월 ~ 2017년06월	서울시 중구 수표로 10길 9, 1층 (저동2가)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만	장준	2017년07월 ~ 2018년01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장준	2018년02월 ~ 2018년08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봉희백	2018년09월 ~ 2019년09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진일호 장준	2019년10월 ~ 2020년08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진일호	2020년08월 ~ 2020년08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진일호 김헌영	2020년8월 ~ 2020년12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김헌영	2021년01월 ~ 2022년05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24-16 5층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커피온리	김헌영	2022년05월 ~ 2022년0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49-8, 3층(연남동)
주식회사 커피온리	커피온리	강남구	2022년10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5층(역삼동, 대건빌딩)

3. [커피온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86111	대분류	소분류 (주요 상품)	
커피온리	커피	커피(아메리카노)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커피온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커피온리] 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2021.12.31			2	2022.12.3	1	2023.12.31		
지역	고기	가맹	직영	TJ 뒤	가맹	직영	무귀	가맹	직영
지 전체	선세	점수	점수	전 체	점수	점수	전체	점수	점수
전체	53	53	_	50	49	1	36	35	1
서울	39	39	_	37	36	1	29	28	1
부산	_	_	_	_	_	_	_	-	_
대구	1	1	_	_	_	_	_	_	_
인천	2	2	ı	2	2	_	1	1	_
광주	1	1	-	1	1	_	1	1	_
대전	_	_	_	_	_	_	_	-	_
울산	1	_	1	_	_	_	ı	1	_
세종	_	_	_	_	_	_	_	-	_
경기	9	9	-	10	10	_	5	5	_
강원	_	_	-	_	_	_	-	ı	_
충북	_	_	-	_	_	_	-	ı	_
충남	_	_	-	_	_	_	_	-	_
전북	-	_	ı	_	_	_	ı	ı	_
전남	_	_	-	_	_	_	-	1	_
경북	1	-	ı	_	_	_	ı	ı	_
경남	1	1	-	_	_	_	-	ı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커피온리] 가맹점 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4	11	9	33	9	53
2022	53	4	2	6	1	49
2023	49	1	15	_	_	35

6. [커피온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여어고기	정보공개서	어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92/VIE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 지스토리	작심	20160479	독서실	212/33	139/27	83/2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 지스토리	작심스터디 카페	20190640	독서실	168/9	196/13	194/15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아이엔 지스토리	작심스페이 스	20190638	기타 서비 스	-/2	-/2	-/1	
가맹본부	㈜커피온리	커피온리	20161207	커피	53/-	49/1	35/1	
가맹본부	㈜커피온리	언노운커피 &베이커리	20212407	커피	0/0	0/0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이치 스페이스	하우스터디 스터디카페	20190115	스터디 카페	91/-	84/-	59/-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이치 스페이스	하우스터디	20170668	독서실	104/-	71/-	45/-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커피온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35개가 아닌 실제 19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익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서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커피온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5	1,550일

9. <u>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u>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광고	(비공개)	(비공개)	10,199	
판촉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전 지점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즉시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u>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u>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커피온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5,500	가맹 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점포 실사, 가맹점 오픈 시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오픈 시 인력지원
교육비	5,500	0/1		교육 개시 이후	-개점 전 조리/서비스/운영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가맹 계약과 동시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근	신규 가입자
합계	13,000
가맹비	5,500
개점 전 교육비	5,5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온리(기준 :26.4㎡(8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급액	면적(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등	71,885	8,985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업체자율 (요청시 가맹본부)	20,350	2,543	협의		
간판 및 싸인물 (내외부,DID,소품포 함)	업체자율 (요청시 가맹본부)	8,470	1,058	협의		전면 간판 (2M기준)
KIOSK 장비	(비공개)	3,080	-	협의		
실사 및 도면비	가맹본부 및 업체자율	1,320	-	협의		
매뉴얼 제공비	가맹본부	2,200	_	협의		

커피머신 및 기물류	(비공개)	21,725	-	협의	
베이커리 장비	(비공개)	4,235	-	협의	
최초 공급 상품	(비공개)	4,400	-	협의	
주방설비	(비공개)	6,105	763	협의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지역별/현장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종 장비 설치비용, 외장공사(금속,유리등), 어닝, 철거, 화장실공사, 냉난방 시설, 전기 승압, 가구, 소방공사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가맹점 인테리어는 시공 및 공급을 가맹 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공 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확인 및 통일성 있는 매장구현을 위하여 공사의 감독을 진행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기획관리비 3.3㎡당 일금 일십일만원(₩110,000) (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 별도의 기획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가맹희망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는 경우 : 기존 가맹점 영업지역 권 침해 여부를 고려 신규 가맹점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희망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 할 경우 : 담당자배정->상담을 통한 지역 파악 ->현장조사 시장 분석->입지 도출->가맹희망자 동의 여부를 구함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안내->가맹희망자와 현장 확인->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가맹 본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커피온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u>영업 중의 부담</u>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220	익월 1일	미반환	지식재산 권의 사용	*별도설명
무인결제 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주)아이엔지스 토리	월55	익월 1일	미반환	지식재산 실사용	*별도설명
DID시스템 유지보수비용	공급업체	연 단위	협의	미반한	지식재산 실사용	*별도설명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영업표지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변경에 따른 비용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제 용역비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결제 연체 시

*로열티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우수가맹점 평가등) 부여로 로열티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월 공급가액이라 함은 가맹점 매장의 총매출액에서 할인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매출액을 말한다.

*DID 시스템

가맹사업자는 제품, 상품 안내 및 제공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유지와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DID 픽업시스템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합니다.

- ㄱ. 장비 기본 구성품 : 디지털 메뉴 보드 + 셋업 박스
- ㄴ. 상기내용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오픈 시 담당자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관리운영비 12개월분 일금 삼십삼만원 (₩330,000)(부가세포함) 선 지급 또는월 단위 지급 한다. (공급업체에 지급)

1개월 기준 일금 이만칠천오백원 (₩27,500)(부가세포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0%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

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 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Q.S.C(품질,위생,서비스) 점검, 월가맹점 매출 및 손익분석, 고객클레임, 가맹본부 정책 준수 점검 및 개선확인, 매장 환경 실태점검 등 정기/수시 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 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커피온리]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희망 시, 그 신청이 당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오픈을 위한 행정적 실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양수가 가능합니다(단, 양도인의 잔존하는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함).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신규 가맹 계약을 요구할 경우, 양수인은 [커피온리]에 오픈을 위한 행정적 실비를 포함한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영업권을 가족에게 양도할 경우, 교육비는 면제되며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가족의 범위는 양도인의 직계존비속 및 2촌 이내의 형제, 자매, 배우자(사실혼배우자제외)까지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6-2)]을 참고하십시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커피온리]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만일 계약 종료 후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커피온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 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커피온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커피온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승인 상품 *홈페이지 (www.coffee900.co m) 참조	1.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2. 제한 내역 그담배 판매 금지 나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등 C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물품 리가맹본부의 통일적 이미지를 해하는 물품 마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 외 제품 등	1.책임 : 계약해지 2.근거 :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 -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 2회 위반 : 상품공급중단5일 - 3회 위반 : 상품공급중단10일 - 4회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본 정보공개서	제한된	1회위반 : 서면시정 요구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V-3-1)에서 지정된 가맹점 판매 제품·상품	거래상대방에게 2회위반 : 상품공급중단5일 무상지원 공급 3회위반 : 상품공급중단10일 및 판매금지 4회위반 : 계약 해지	
---	--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소매가격(이벤트,행사 등 판촉시 진행되는 할인 가격 제외)을 고려하여 상품 . 용역 등의 판매가격을 권장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권장가격과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데이크이오 리피 저무저	커피온리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언노운커피&베이커리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특수상권은 별도 상권으로 분리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온라인/모바일주문 서비스관련 본 정보공개서 V-4-7) 참조)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 예외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지역내라 하더라도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음

- ①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기존 가맹점을 폐점 후 재 출점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
- ② 철도 또는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철길,강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 ③ 특수 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백화점,대형마트,지하상가,공항,호텔,대형병원,관공서,대학교,시장,입시학원 밀집지역, 고 시촌, 공무원학원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대형오피스건물, 대형쇼핑몰 등 샵인샵 형태)

④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 정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 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가맹 사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 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_ 해당 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_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온라인 /모바일 등 판매(주문)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모바일, 딜리버리 서비스 등의 판매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컨텐츠 문화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트랜드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의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온라인/모바일 판매나 딜리버리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은 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온라인 / 모바일 판매의 딜리버리 서비스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에 적용 되지 않으나 특수 상권 등 당사와 협의 후 영업지역 설정은 가능하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4.5%	5.5%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커피온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예→②, 아니오→⑦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예→④, 아니오→③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예→⑤, 아니오→A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①+15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예→B, 아니오→®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예→E, 아니오→A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1항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 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서에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편0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해당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해당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해당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 계약서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로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고 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H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려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준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중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 경)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였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그다리기 어려운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
→ 수정 완료	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행정적 실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 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 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 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		

8. <u>경업금지, 영업시간</u>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귀하 또는 귀하와 관련된 제3자가 [커피온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커피와 차를 판매하는 업종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본사 (1588-5049)
동일업종 가맹본부		(1300 304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커피온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주 자율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80% 이상 개장	문의: 본사 (1588-50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배우자, 친·인척 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원부재료 품질기준 준수 여부, 매장 위생 및 청결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내역 점검 → 상담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 → 완료	정기/ 수시	

- *당사는 영업장내 상태를 점거할 수 있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 판단 될 경우 가맹계약서에 따라 시정 요구 및 보수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 *전체 점포에 대한 매뉴얼관련 혹은 친절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분기에는 당사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위 점검결과에 따라 점포 차등 적용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 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_	_	
	개별광고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100%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ᅯᄀ	브랜드광고	가맹사업법 제	12조의6제1항에	<광고>	
	전국	브랜드	따른 사전약정	정서 체결 또는	광고 실시 전 계획안	
	및 지역별	광고	동의절차 /	시 행사별로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광고 	+ 가맹점	분담비	율 안내	가맹점의 행사 참여	

	모집광고			
	저그 미 디어버피초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로 부터 사전에 문서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한 메뉴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사가 공급하는 원두가 아닌 다른 원두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도 귀하는 동일한 위약벌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8조의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에게 위약 벌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서 제공	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0~2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D-26	11~12쪽 참조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6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3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2~3 (20일)	
교육실시	- 커피 추출 - 판매·점포운영교육 실시	D-9~3 (7일)	
설비 및 집기	- 주방·홀 설비 및 집기 - 에스프레소 머신, 주방설비, 원·부자재 입고	D-10~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표준모델 33㎡(10평)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

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 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 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 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 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 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낙관적 으로 경우 으로 경우 산 전의 연애로 인 하여 등지하기 어렵거나 영업 어렵건 어제를 주는 어제 한 주는 우	O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 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 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는 점포환경 개선: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총부담액의 30%2차: 1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부담액의 30%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부담액의 40%	O점 보는 사이 생각 이 보는 사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및 경영개선방안을 제공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제공) 가맹점	문의: 본사 (1588-504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커피온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매장 운영 관리 -서비스 및 고객관리 -레시피 교육 -위생관리 -현장 실습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점 개전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친절교육 -마케팅교육 -커피이론,기기설비,메뉴제조 -신메뉴 출시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 후 필요시	교육소환시 필수 이수(단,가맹점 자발 수강인 경우 선택)
특별 교육	필요한 부분 파악 후 중점 교육	협의	개점후 필요시	필요시 수행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커피온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4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결정	필요시 수행
특별 교육	협의 후 결정	협의 후 결정	필요시 수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없음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교대본점	서초대로51길 14, 1층 103호 (서초동,JH엘로펌애비뉴빌딩)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_해당없음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년 2개월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_해당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6,57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품목, 제조사/공급단위/거래상대방은 시장상황 및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3] 재무제표 (2021년, 2022년,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